

判例 및 審査 決定事例

- 大法院 判例 -

1. 2000.5.30. 선고 98두109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 및 제128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재산의 의미 및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는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

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조항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 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 1 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의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8조는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제 1 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나중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00.5.30. 선고 99두6309 판결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토목건축업 및 도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12.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의3 대지 1,900.7㎡ 및 그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203.84㎡, 토지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1995. 4. 27.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건설은 위 토지에다가 지상 10층, 지하 3층의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건축을 포기하고, 기존의 위 건물 중 1,029.36㎡는 주식회사 ○○유통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174.4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는 ○○건설 건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건설 건적팀은 ○○건설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부서 소속의 직원이 파견되어 구성되는 비상설부서로서 ○○건설의 사업 개시 당시부터 계속 존재하였는데 1991. 5.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8의2 소재 ○○빌딩 4층을 보증금 50,000,000원(나중에 100,000,000원으로 인상함)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년 5월 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한 사실, 피고는 ○○건설 건적팀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하게 되자,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위 조항에서 정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된 것으로 보아 증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당초 납

부한 세액의 차액을 추정하기로 하여, 1997. 8. 10. 취득세 120,0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005,5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건설에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설 건적팀의 업무는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건적팀이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은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사무실 이전에 불과하므로 그 사용으로 인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산업집중이 새로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적팀이 입주한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그 대지 부분은 위 지방세법이 규정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 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일반 취득세율의 5배로 중과하고 있고,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위 조항과 같이 중과하여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이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12조의 그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

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서울특별시 내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취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經常稅・臨時稅(경상세・임시세)

조세과징의 시기에 관한 조세분류로서 세법의 폐지가 없는 이상 계속하여 매년 부과 징수되는 것이 경상세이고, 특별히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연한을 두고 부과 징수하는 것이 임시세이다. 조세의 대부분은 경상세이고 전시중의 전시이득세, 전후의 재정충당을 위한 임시재산세등과 같이 전쟁에 관계되는 임시세가 대부분이며 현재에는 임시세가 극히 예외적인 존재이다.

- 편 집 실 -

判例 및 審査 決定事例

- 行政自治部 決定事例 -

1. 2000.7.25. 제2000-559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법인의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식 소유 비율이 25%인 주주를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해당 법인의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며,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과 과점주주 중 청구인의 형이 주식 45%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취소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 3. 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청구인 (주)○○주택건설(이하 “이건 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체납함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

구인을 구지방세법 제22조(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 무자로 보아 1999. 12. 13. 취득세 96,303,380원, 등록세 95,656,790원, 재산세 522,490원, 종합토지세 1,010,340원, 도시계획세 893,100원, 공동시설세 119,820원, 교육세 17,809,900원, 농어촌 특별세 5,668,450원, 합계 217,984,270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주택건설의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1991. 6. 18. 이진 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이후인 1997. 12. 31. 까지 ○○종합건설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관계로 전혀 이사로 근무한 적도,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받은 일도 없으며,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5%에 불과한 명목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위치에 있지도 않음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 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표이사(45%)와 특수관계에 있어 과점주주에는 해당되나 소유주식이 25%인 청구인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위치에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감사 등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

인은 (주)○○주택건설의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형인 대표이사 ○○○이 45%, 청구인이 25%를 소유함으로써 합계 70%를 소유한 과점 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주)○○주택건설의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 217,984,270원을 1999. 12. 13 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건 납부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2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전체 주식 10,000주의 25%를 보유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 아니며,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와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주주들과 함께 회사를 경영해 온 사실만으로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밝혀 본 다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 10. 13. 선고 97누5930 참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2년부터 1997년 말까지 ○○종합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과, 처분청도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 ○○○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의 지배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0.7.25. 제2000-578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지정을 받지 않은 유통단지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 처분청이 스스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을 한 후 이를 착오로 감면된 것으로 보아 추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추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1] 토지 연부취득 당시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조성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그 부칙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유통시설에 대하여 유통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유통단지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상에 신축한 화물터미널의 경우 지방세법 제280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청구인이 화물터미널 신축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려고 하자, 처분청은 해당 건축물이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확인서를 발행해주고,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토록 납부서를 발부하는 등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조치를 하였다가 추후 관계법령의 해석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정하면서 납세지연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결정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12. 22. ~ 1996. 10. 22.간 연부취득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42번지의 대지 3필지 168,438㎡와 1996. 10. 5. 및 1997. 10. 6. 신축준공한 업무시설·판매시설용 건축물 9개동 45,624.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의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였

으나, 이건 부동산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통단지내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1,156,549,380원, 등록세 2,573,853,330원, 재산세 51,207,980원, 종합토지세 266,438,680원, 교육세 492,504,870원, 농어촌특별세 39,965,350원, 합계 4,580,519,590원(가산세 포함)을 2000. 4. 11.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90. 1. 21. 부산광역시로부터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등사업을 시행하던 중 1995. 12. 29.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흡수되었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유통시설 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유통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부산광역시에서는 동 경과조치에 따라 이권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유통단지로서의 지정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었으므로 동 지정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권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유통단지내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둘째, 가사 이권 부동산이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권의 경우 청구인이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서 이권 부동산

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며 직권으로 감면처분을 한 것인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 부의 판단

이권 심사청구는 이권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에 의한 유통단지내 유통사업용 부동산인지의 여부 및 이권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1995. 12. 6. 법률 제495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제1호및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안에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서 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100만㎡

이하)이하의 유통단지는 관할 시·도지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유통시설중 심의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유통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법의 일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유 및 그 조건 등에 관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0. 11. 21. 부산광역시로부터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1991. 6. 26. 한국수자원공사와 이건 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1996. 12. 22.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였으며, 1993. 1. 21. 이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6. 10. 5. 7개동을 준공,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7. 10. 6. 나머지 2개동을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화물터미널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995. 12. 6. 지방

세법 제280조제5항에서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자,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이 동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1996. 1. 1. 이후 행해진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96년도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였으나, 추후 이건 부동산이 유통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유통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소재지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에서 동 법의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건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유통단지 지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으므로 동 지정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유통단지내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 및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가 지정한 유통단지 내의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29. 제정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유통시설 대하여 유통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와 사유 및 조건 등에 관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건설교통부에서 1998. 4. 21. 동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사업 인정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산업자원부에 협의공문을 발송하자, 같은 해 4. 27. 산업자원부에서는 청구인에게 유통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유통단지로서의 지정을 받지 못한 이상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이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유통단지 내의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감면조치를 취한 후에 법령해석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주장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 2. 9. 95누3596호 판결 참조)할 것인바,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6. 10. 5. 이건 건축물 중 7개동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처분청에 30일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하자,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280조제5항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1996. 11. 2.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농어촌특별세만을 납부토록 하는 세액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가 추후 관계법령의 해석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지연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96-278, 1996. 7. 25).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更改(경개)

신채무를 성립시킴으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서 이에에는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즉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 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이다(민법§500~§505). 채권자의 교체로 인한 경개는 신규양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삼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에 있어 서과 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교체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할 수 없다. 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경개의 효력은 ①구채무가 소멸하고 이에 종전 채무(보증채무, 담보권(질권저당권) 등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신채무는 구채무와 전혀 별개의 채무이므로 구채권에 관하여 존재한 항변권을 신채무에 관하여 주장할 수 없으나 채권자의 교체로 인한 경개에 있어서는 항변권을 유보한 경우에 한하여 신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지방세법 중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시점 이전에 경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취득세의 납세 의무가 이전되는 것이나 취득시점 이후에 경개계약이 이루어진 때에는 취득시점현재의 계약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

- 편집 실 -